

■ 건설기계 수급조절 피해 사례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FTA 등 통상 분쟁 소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여 굴삭기 기종 수급조절 제외 문제점)

의견 요지:

- 외교통상부의 WTO, FTA 위반소지 유권해석을 근거로 굴삭기 기종이 건설기계 수급조절에서 제외되었던 결정을 철회하고 굴삭기 기종을 포함할 것
- 수급조절 시행 기종인 덤프와 레미콘 수급조절의 안정적 시행
-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한미 FTA 등 국제조약 재재협상 등을 통한 수정(유보목록 포함 등), 기 협정에 대해서 수정할 것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1993년 건설기계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등록 건설기계 가 증가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도 증대되고,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평균 가동율이 40-50%대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통하여 건설기계노동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일조하고자 하여,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 통과되었음.
- 이에 따라서 2008년, 2009년 2차례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하여 2년간 수급조절 시범 시행을 하게 되었음. (시행기간 : 2009.8.1 - 2011.7.31.)
- 2011.7.31.자로 위의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의 수급조절 기간이 만료가 되어, 국토해양부는 2010.12.부터 2011.6.까지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주었음.
- 연구용역 결과 덤프, 레미콘, 굴삭기, 콘크리트펌프카 4개 기종에 대하여 향후 10년 동안 초과공급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2011.6.10.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
- 연구용역 결과가 이러함에도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 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WTO, FTA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는 외교통상부에 유권해석을 근거로 덤프와

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기간 연장하였지만, 굴삭기 기종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특히, 굴삭기 기종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하면_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일시적인 특수효과)이 2011년 6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 건설기계의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 굴삭기 등록현황(예) - 2000년 79,770대에서 2010년 117,306대로 대폭 증가

※ 건설투자 전망(국토연구원.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 시행)

->2011년 : -0.1% , 2012년 : 3.1% , 2013년 : 2.2% , 2014년 : 1.5% , 2015년 : 1.2%

->건설투자 전망치는 2011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1년 -2015년까지 평균 1.6%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건설기계 과잉공급의 문제점(과당경쟁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 부실공사, 안전사고 증대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라는 주권 국가의 법정책이 소위 WTO, FTA 통상문제라는 이유로 기 제정된 국내법과 시책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외국(?)정부, 대기업만을 위한 정부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박주선 국회의원 요청자료)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국제법 학자의 학설을 따르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투입요소(input)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국제통상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2) 해결 방안

○ 건설현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를 통한 부실공사 추방 등의 긍정적인 작용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기본 바탕인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국제법(FTA, WTO)에 휘둘리지 않고 주권국가로서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FTA 등에 대한 재재협상을 통한 수정 및 기 협정에 대한 수정 등 대응책 마련)

(예) 화물자동차 수급조절 같은 경우에 한미 FTA에 유보목록에 포함해서 국내규제권을 확보한 사례)

○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로 쏟아져 나와 과잉공급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굴삭기 기종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수급조절 재연장이 결정된 덤프,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해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수급조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덤프,레미콘 2개 기종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 등 거론시 수급조절 시행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 차단하고 국내 건설경기동향에 근거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 시행)